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 및 그 배우자 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 정지>

■ 추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44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추미애의원 등 54인
2. 발 의 일: 2024. 10. 17.
3. 회 부 일: 2024. 10. 1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 때문에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의 경우, 권력으로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집권기간 동안 철저하게 은닉할 가능성이 크며, 그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음.

이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그리고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되도록 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253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통령(대통령권한대행 및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범한 죄의 경우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퇴임일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려는 것임(안 제25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제253조의3(대통령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다음 각 호의 자가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 정지한다.</u> <u>1. 대통령(「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u> <u>2. 대통령의 배우자</u> <u>3. 위 각 호의 4촌 이내의 혈족</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공소시효(公訴時效) 제도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 검사의 공소제기 없이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면 그 범죄에 관한 국가의 형사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함. 이러한 공소시효 제도는 ① 일정한 기간 경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피해자의 처벌 감정이 줄어들었고, ②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③ 증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따르고, ④ 오래된 범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필요를 면제하여 국가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임.¹⁾

한편, 공소시효의 정지는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진행이 정지되고 그 사유가 없어지면 정지 이전에 남아있는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함. 공소시효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가 소추권을 면할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 또한 방지하여야 함. 따라서, 소추기관이 법적·제도적 장애사유 없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제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정지의 근거를 찾을 수 있음.

1) 독일·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공소시효 제도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에 따라 기소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으나, 영국은 약식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음.

(2) 공소시효 정지 관련 입법례

공소시효의 정지 관련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고 있음. 이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인식능력, 인지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여 실제 피해사실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의 신고나 공론화가 어려워 공소시효 내에 국가의 소추권 행사가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임.

<특정범죄 공소시효 정지 관련 입법례>

법률 (개정일)	대상범죄	정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1항 (10.4.15.)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성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10.4.1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년까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 (14.1.28.)	아동학대범죄	성년까지

(3) 검토의견

개정안은 대통령,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범한 죄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중에는 수사 및 공소제기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전제하에,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함으로써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검찰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각 수사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인사권을 보유²⁾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또한, 대통령 본인의 경우 헌법 제84³⁾조에 따라 재직 중 불소추특권을 보유하는데,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규정이 국가의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임일부터 퇴임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한다고 판시⁴⁾한 바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대통령 지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범한 죄에 대하여 대통령의 퇴임 시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려는 취지임.

다만, 시효정지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 및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소시효를

2)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②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수사처검사) ① 수사처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3)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4) “헌법 제84조의 규정취지와 함께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규정은 바로 공소시효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의 소추권행사의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헌재 1995. 1. 20. 94헌마246 결정

정지하는 것은 친족의 교류가 점점 줄고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는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대통령권한대행도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문구(「공직선거법」 제187조제3항, 제4항에 따른 당선증을 교부받은 날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퇴임일까지)만으로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공소시효 정지 시기 및 종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의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063